

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- 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1.2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위생관리과장 최순향)

제안이유
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,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 운영중인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식품·영양분야 뿐만 아니라,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

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나. 위탁시설 개요

시 설 명	소재지	시설규모	종사자수	비 고
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	강서로52길 89, 6~7층 (내발산동 문화센터)	376㎡	3명	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시설 통합사용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사회복지급식소의 현장 순회 방문 지도를 통한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
- 급식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소컨설팅 등 지원활동
- 노인·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조리안내서 제공
- 대상별 위생·안전 및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
-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의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

라. 위탁기간: 3년 6개월 (2023. 7. 1. ~ 2026. 12. 31.)

※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잔여기간

마.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계약

바. 소요예산(2023년도 기준): 50,000천원(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)
(단위: 천원)

구분	사업예산 (100%)	국비 (30%)	시비 (35%)	구비 (35%)	비고
운영기간 2023년 7월~12월	50,000	15,000	17,500	17,500	6개월 운영

사. 추진일정

- 2022년 10월: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사
- 2023년 상반기: 민간위탁 체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, 제11조
- 식품의약품안전처 「2022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」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- 본 동의안은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
-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하였고, 이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“사회복지시설급식법”)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
-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

- 검토결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또한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1)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2)에서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,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한 선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

1)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2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- 심의위원회를 실시(2022. 10. 21.)하여 신규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‘적정’ 의결하고,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급식관리 지원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인프라가 마련된 기관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적절해보임

※ 강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연혁

구 분	기 간	사업규모	위탁기관
1차	2011. 4. 26. ~ 2012. 12. 31.	2011년: 3억규모	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
2차	2013. 1. 1. ~ 2015. 12. 31.	2012~2020년 : 4억규모 운영	
3차	2016. 1. 1. ~ 2018. 12. 31.		
4차	2019. 1. 1. ~ 2021. 12. 31.	2021년: 5억규모	
5차	2022. 1. 1. ~ 2026. 12. 31.	2022년: 5억규모	

- 다만, 위탁체 선정 후에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잡힌 식단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·감독 및 지원³⁾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3) 사업대상: 관내 사회복지급식소 98개소

(2022. 9. 1. 기준)

구분	계	노인복지시설	장애인복지시설	비고
전체 대상 수	98개소	64개소	34개소	
우선 대상 수	75개소	48개소	27개소	*50인 미만

참고

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의 발생요인: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
2. 비용추계의 전제: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
세출	사업운영비	5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450,000

※ 인건비 연 2% 증액 계상, 관리급식소 수 증감에 따른 운영비 증가율 미반영
- 국, 시, 구 매칭 사업으로 법 개정 및 예산교부에 따른 증감 발생 가능

4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(총 50,000천원)

(단위: 천원)

항 목	재원별 예산				산출내역
	계	국비	시비	구비	
인건비	31,500	9,450	11,025	11,025	월급여 2,625,000원 × 6개월 × 2명
운영비 등	18,500	5,550	6,475	6,475	3,083,340원 × 6개월
계	50,000	15,000	17,500	17,500	535,500,000원

5. 재원조달 방안: 국비30%, 시비35%, 구비35%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
국 비 (30%)		15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35,000
시 비 (35%)		17,500	35,000	35,000	35,000	35,000	157,500
구 비 (35%)		17,500	35,000	35,000	35,000	35,000	157,500
합 계		5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450,000

6. 작성자: 보건소 위생관리과(담당자: 보건7급 박세희 2600-5839)

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

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제11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,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“심사위원회”)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한다.
-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